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[별지 제7호서식]

행 정 기 관 명

수신

(경유)

제목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통지

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」 제7조제3항(제9조제3항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괄납부한도액을 재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다 음

재산정일자	일괄납부한도액		재산정 사유	사업자등록번호	통관고유번호
	종 전	재 산 정			

※ 재산정 일괄납부한도액 유효 기간 : 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. 끝.

○ ○ 세 관 장

기안자	직위(직급) 서명	검토자	직위(직급) 서명	결재권자	직위(직급) 서명
협조자					
시행				접수	

우 00000 (주소)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 000-000-0000 팩스번호 000-000-0000 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비공개(7)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